

공간디자인센터 운영 규정

제정 0000. 0. 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공간디자인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대학의 창조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기본 계획 수립
2. 대학시설 내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계되는 주요 사항
3. 대학시설 내 공간의 디자인

제3조(조직) ①센터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통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,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4조(교육공간위원회)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①위원으로는 교육지원처장, 교육개발처장, 공간디자인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스쿨원장이 추천한 스쿨별 1인은 임명직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④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관계부서의 협조) 센터는 관계부서와 스쿨(원)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